

1. 개정 이유

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, 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」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‘국가 주요 행사’를 추가(제2조제2항)
- 나. 「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」 중 ‘미륵사지유물전시관’을 ‘익산 박물관’(제2조제1항)으로, ‘하사관’을 ‘부사관’(제5조제1항제9호)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합의 전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심사 전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3호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휴관)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,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월 1일 2. 월요일(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·공주박물관·진주박물관·청주박물관·대구박물관·김해박물관·제주박물관·춘천박물관·나주박물관 및 <u>미륵사지유물전시관</u>에 한한다)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. 설날 및 추석 ② 국립중앙박물관장, 국립민속박물관장,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(이하 “박물관장”이라	제2조(휴관)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,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월 1일 2. 월요일(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방박물관 중 부여박물관·공주박물관·진주박물관·청주박물관·대구박물관·김해박물관·제주박물관·춘천박물관·나주박물관 및 <u>익산박물관</u>에 한한다)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. 설날 및 추석 ② 국립중앙박물관장, 국립민속박물관장,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(이하 “박물관장”이라

한다)은 <u>시설의 보수,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</u> 제5조(관람료의 면제 등)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1.~8. (생략) 9. 군경(<u>하사관</u>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)	한다)은 <u>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</u> 1. <u>시설의 보수</u> 2. <u>전시품의 교체</u> 3. <u>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제5조(관람료의 면제 등)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1.~8. (생략) 9. 군경(<u>부사관</u>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)
---	--